

제 호

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서

1. 기관(단체) 명칭:
2. 소재지:
3. 대표자:

「문화재보호법」 제80조의5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
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
특별자치도지사

직인